

駐車場法 施行令

대통령령 제9,536호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 1 항의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재원조서

2. 공사설계도서

3. 사업지내의 토지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현황도

4. 주차장의 유치권과 유치권내의 도로소통을 표시한 축척 10,0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3조(주차요금의 기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을 능률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적정한 원가를 적용할 것.

2.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취급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고정지 출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당해 주차장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토지 매입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금리해당액과 기업이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할 것.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자동차를 출차시킬 때에 징수한다. 다만,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수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에 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 한다.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된 주차요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경우에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와 기타 노외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④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환부방법·환부액 및 수수료 기타 주차요금의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노외주차장관리자인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가 노외주차장관리자인 때에는 법 제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으로 각각 정한다.

제5조(중지등의 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노외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의 공용의 중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14일전에 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내용 (노외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할것)
 5. 중지의 예정기간 또는 폐지의 시기
 6.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 (2)시장 또는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공용의 중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취지를 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이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①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전시시설·공연시설·공동주택·운동시설·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용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 1 호의 지역내에서 제 1 호에 게기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 1 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효용의 유지 및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대 수 1 대에 대하여 폭 2.5미터이상, 길이 6 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의 부설명령) ①법 제19조 제 3 항의 규정에 “특정건축물”이라함은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 게기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 또는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 1 항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정한 주차장설치기준면적에 그 기준면적의 3 분의 2 를 가산한 범위안에서 당해 건축물 또는 대지안이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주차장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차장설치비용의 절감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2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의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위치
2.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주차장 설치명령을 하는 사유
4. 주차장의 설치면적
5. 주차장의 설치기간.
6. 기타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되는 사항

④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옥내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접하고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이외의 차량통행로가 없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한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통행금지기간에 2주일을 가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점용로의 감면)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 및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2.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주차장정비구역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일로부터 공용을 계시한 후 10년까지 이를 면제하고, 그 면제기간 이외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 주차장정비구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보조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용에 공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용에 공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사항에 대한 이행확보방안

제12조(권리의무의 이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양수허가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권리의무의 종류

다.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및 그 내역

2.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다. 이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날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발기인 또는 설립자가 법인을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그 허가를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은 그 설립동기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법인이 소멸하기 전에 받은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의 일부를 준용하는 노외주차장은 일반 단수인의 이용에 공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내지 제18조·제22조 내지 제26조 및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이를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설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건축법시행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22조·제22조의 2 및 제153조를 삭제한다.